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

① 개인정보파일명	기숙시설 이용자 명부 레이아웃			
② 이용 또는 제공여부	☐ 목적외 이용 ☒ 목적외 제공			
② 이용·제공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수성대학교	담당자	성 명	윤 원 경
			소 속	행복기숙사
			전화번호	053)749-7456
③ 제공받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성 명	유 재 우
			소 속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141
④ 이용·제공일자, 주기 또는 기간	제공일자 2021. 11. 19.			
⑤ 이용·제공형태	엑셀(xlsx)			
⑥ 이용·제공목적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위한 자료 제출			
⑦ 이용·제공근거	제18조 제2항 1호			
⑧ 이용·제공항목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소일, 캠퍼스 주소 등			
⑨ 제공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	1.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3.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2항 1호 ~ 9호 등 관련 근거 기술

항 목	상 세 내 용
제18조 제2항 1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제18조 제2항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2항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제18조 제2항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9호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

① 개인정보파일명	기숙시설 이용자 명부 레이아웃			
② 이용 또는 제공여부	☐ 목적외 이용 ☒ 목적외 제공			
② 이용·제공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수성대학교	담당자	성 명	정 미 정
			소 속	생활관
			전화번호	053)749-7453
③ 제공받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담당자	성 명	유 재 우
			소 속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141
④ 이용·제공일자, 주기 또는 기간	제공일자 2021. 11. 19.			
⑤ 이용·제공형태	엑셀(xlsx)			
⑥ 이용·제공목적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를 위한 자료 제출			
⑦ 이용·제공근거	제18조 제2항 1호			
⑧ 이용·제공항목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소일, 캠퍼스 주소 등			
⑨ 제공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	1. 비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밀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3. 비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의 2항 1호 ~ 9호 등 관련 근거 기술

항 목	상 세 내 용
제18조 제2항 1호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제18조 제2항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제18조 제2항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2항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제18조 제2항 6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8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항 9호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